금전소비대차계약표준약관

(융자한도계약표준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에이치유크레디트대부(주)(이하 'HU' 라고 칭함)와 고객간의 융자한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HU' 와 고객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 3 조 (실명거래)
(1) 'HU' 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2) 'HU' 는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인 및 실명확인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서명 등 거래당사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 및 전자적인 형태의 서명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3) 'HU' 와 고객 사이의 계약은 거래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
(1) 'HU' 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고객은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HU' 는 계약체결전에 이 약관 제6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거래당사자와 보증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HU' 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본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 6 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융자한도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HU' (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고객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융자한도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
(10)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1)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 7 조 (이자율 등의 제한)
(1) 'HU' 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체당금 그 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HU' 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다만 당해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HU'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4) 고객이 'HU' 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HU' 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고객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 8 조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① 고객, 연대보증인에 대한 'HU' 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②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비용(법적비용을 포함하여 방문독촉시의 교통비, 내용증명, 전보, 우편환요금 등 고객이 채무불이행 및 채무이행지체 발생시 'HU' 가 행하는 모든 독촉비용) 및 통지비용
③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
(2) 'HU' 나 'HU' 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비용을 'HU' 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HU' 는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이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고객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HU' 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4) 'HU' 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9 조 (계약서 등의 교부)
(1) 고객내점 계약시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HU' 와 고객이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송금에 의한 상환시 영수증 교부의 경우 고객의 사정에 따라 영수증은 'HU' 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단 고객으로부터 영수증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HU' 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4) 팩스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계약체결시 원본계약서는 'HU' 가 보관하고 사본을 원본계약서에 간인한 후 고객에게 발송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상환내용 및 차입잔고의 확인은 'HU' 발행의 명세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고객은 명세서를 받으면 즉시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고객이 명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상환내용 · 차입잔고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계약서의 반환
본 계약서에 따라 상환 완료 후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HU' 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단 고객의 상환에 따라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HU' 는 계약종료시부터 2년간 보관하고 그 동안 고객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고객이 계약서의 파기를 희망한 경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보유한도까지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내용에 따라 'HU' 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담보의 제공)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제공한 담보의 가치 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HU' 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객은 'HU' 의 청구에 의하여 'HU' 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 12 조(이자율의 계산)
(1) 차입연이율 : 융자한도계약서 표지기재와 같다
(2) 차입연체이율 : 융자한도계약서 표지기재와 같다.
(3) 차입이자의 계산방법
차입잔고×차입이율÷365일×대출일 또는 직전 상환일로부터 당해 상환일 또는 당해 약정상환일까지의 이용일수
(단 이용일수계산시 당해 상환일 또는 당해 약정상환일은 제외)
(4) 지연손해금 계산방법
차입잔고×연체이율÷365일×약정상환일로부터 완전 상환일까지의 일수,기한의 이익상실시는 기한의 이익상실 시부터 완전상환일까지의 일수(단 일수계산시 완전상환일은 제외)

제 13 조(계약심사 및 한도) 고객은 계약한도액 및 그에 따른 차입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사전에 승인한다.
(1) 계약한도액은 'HU' 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2) 고객은 융자한도계약기간 중 위(1)항의 계약한도액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차입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의 신용상태 변동시 이용한도액은 'HU' 와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계약기간의 만료) 융자한도계약기간의 만료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융자한도계약기간의 만료시 'HU' 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자한도계약기간의 연장은 고객의 동의 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융자한도계약기간 만기도래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상한금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만기 이후부터 변동된 상한금리를 적용하고 제6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3조의 (1)항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계약서의 교부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한의 이익상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매각, 대손상각, 매각으로 인한 완제, 채무조정대상 채권은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융자한도계약기간 내에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3조의 (1)항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이 때 계약서의 교부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대여금의 상환)
(1) 상환방식(잔고 슬라이드 리볼빙 결제방식)
① 매회 약정상환액은 최종차입시의 차입잔고에 따라서 'HU' 가 작성한 「융자한도액 상환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융자한도액 상환액표」에 따른 매회 약정상환액은 제12조 3항의 차입이자의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이자와 원금(약정상환액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2) 상환기간 · 최종상환일
① 상환기간…융자한도계약서 표지기재와 같이
② 약정상환회수…융자한도계약서 표지기재와 같이
③ 최종상환일…최종 차입일 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약정상환일로부터 위②항의 약정회수에 해당하는 개월 후의 약정상환일이 최종 상환일이 됩니다.
(3) 약정상환일
① 상환은 매월1회 약정상환일까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약정상환일이 'HU' 의 휴업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로 하되, 단 이자는 상환당일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또 약정상환일의 응당일이 없는 달은 그 달의 말일(末日)을 약정상환일로 합니다.
② 고객의 사정에 따라 약정상환일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고객이 신청을 하고 'HU' 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약정상환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의 차입과 채무이행 및 상환방법
① 차입방법
'HU' 지점창구, 'HU' 가 승인하고 고객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고객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단 계좌입금의 경우 고객의 지정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고객이 동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채무이행 및 상환방법
㉮ 고객의 채무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달의 약정상환액을 모두 현금으로 약정상환일까지 'HU' 지점창구에서 상환하는 방법과 'HU' 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HU'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HU' 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고객이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융자한도계약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5) 기한전 임의 상환
① 매회 약정상환일 8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한전에 임의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그에 따라 약정상환회수 및 최종상환일의 상환금액이 조정된다. 단 매회의 약정상환일전 7일 이내에 약정상환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회의 약정상환을 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정상환일전 상환시의 이자는 상환 당일까지 계산된 금액이 된다.
② 매회의 약정상환액을 초과하여 상환을 한 경우에도 위 ①항의 본문규정을 준용한다.따라서 그 직후 도래하는 약정상환액의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①항의 본문에 따라 약정상환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약정상환회수 또는 최종상환일의 상환금액이 조정된다.
③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한도계약 체결시 고객과 기한전의 임의변제로 'HU' 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16 조 (상환금의 충당순위)
(1) 고객의 채무변제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다만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비용, 미수이자, 차입이자, 연체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HU' 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상환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상환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고객의 채무잔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환에 충당하기로 한다.다만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HU' 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HU' 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HU' 가 상환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HU' 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HU' 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한의 이익상실)
(1)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HU' 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채무전액을 즉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제집행의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이나 개인회생 및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③ 고객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될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④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거래정서 문란자 및 채무불이행처 또는 타 금융기관에 연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고객의 신용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⑥ 퇴직, 휴직, 어음의 부도 및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⑦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⑧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⑨ 제18조에 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혹은 소재가 불투명할 경우
⑩ 그 외 본 계약서조항에 위반했을 경우
(2)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다만 'HU' 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여야할 때부터 3영업일이 도래한때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고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HU' 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HU' 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HU' 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고객은 'HU' 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① 고객과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융자한도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계약서, 소득증명내역, 인적사항확인 서류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② 고객이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
③ 고객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4) 제17조 (1)항 (2)항 (3)항에 의하여 고객이 'HU' 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HU'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HU' 가 분할상환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HU' 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로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 18 조 (통지사항 및 효력)
(1)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서면으로 'HU' 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HU' 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이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HU' 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3) 'HU' 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채권양도)
'HU' 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0 조 (신용정보)
(1)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고객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HU' 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3) 'HU' 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이행장소 · 준거법)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2)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 22 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1) 'HU' ('HU' 로부터 융자한도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융자한도계약서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① 고객 또는 관계인을 폭행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양 · 영상 또는 물건을 고객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④ 고객 이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과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⑤ 고객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⑥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고객 이외의 사람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⑦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고객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⑧ 고객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고객의 관계인에게 고객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2) 'HU' 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약관의 변경)
(1) 'HU' 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본점 및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HU' 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융자한도계약에 관하여 'HU' 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HU' 의 본사 및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HU' 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 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 26 조 (그 외 특약사항)
(1) 'HU' 가 거주지 확인 또는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고객의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HU' 에 제출한다.
(2) 'HU' 가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준하여 계약기간 내에 추가 차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정상환금은 「융자한도액 상환액표」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